

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염동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1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9. 28.

발의자 : 염동열 · 김기선 · 이우현

김명연 · 김한표 · 이현재

엄용수 · 김현아 · 박대출

곽대훈 · 이양수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국제회의 시설을 보유·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전담조직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함.

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2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, 현재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국제회의 시설을 보유·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담조직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담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5조).

법률 제 호

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설치할 수 있다”를 “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) ① (생략) ② 국제회의 시설을 보유·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담조직을 <u>설치</u> 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설치·운영</u> <u>할 수 있으며,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</u> <u>수 있다.</u></p>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